

화순군열린군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 6. 화순군수

나. 회부일자 : 2001. 7. 3

다. 상정일자 : 2001. 7. 3

(제96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김성인 의원

나. 제정사유

- 지방화·정보화 시대를 맞아 화순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 정보를 보다 능동적으로 공개하여 군민과 행정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충족과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열린군정」구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 전문을 두어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열린군정」을 위한 화순군의 의지를 천명(전문)
-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을 군, 군의 소속행정기관 및 화순군 조례에 의한 투자기관·출연기관으로 함 (제2조)
- 정보공개 확대 및 관련제도 정비를 위한 화순군의 책무를 조례에 명문화 함 (제4조)
- 예산·결산, 부문별 중장기 계획, 연도별 업무계획등 기본적인 군정 운영관련 사항을 군민의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공표제도」를 도입 (제7조)
 - (1) 정례적 공표대상 : 6종
 - (2) 수시공표 대상 : 13종

-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등 군민의 편의증진과 반부패 의지실천을 위한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면문화 (제8조)
-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에 정보공개 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정열)

- 본 제정 조례안은 김성인 의원 및 6명의 의원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생략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첨부 : 화순군일련군정을 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

화순군 「열린군정」 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전 문)

정보화·지방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새 천년을 맞이하여 화순군은 군민의 군정참여를 보장하는 가운데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야 하는 책무를 안고 있다. 행정 정보의 공개는 한편으로는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군민의 군정참여를 촉진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군정」을 구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과 아울러 정보화 시대에 있어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하에 화순군은 군민이 행정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행정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화순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군 행정(이하 "군정"이라 한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이라 함은 화순군(화순군 소속 행정기관 포함) 및 화순군 조례에 의한 투자기관·출연기관(이하 "투자기관·출연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청구인"이라 함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화순군의 책무) 화순군수는 행정정보를 군민이 신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 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의 장은 주요 공개대상 목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행정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청구하고 공개 받은 행정정보를 청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행정정보공표제도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집행기관의 당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계획
 2. 집행기관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3. 집행기관의 장(군수)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4. 화순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정수의 수질검사 측정결과
 5. 화순군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교통량 및 도시계획 관련 통계 등)
 6. 화순군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결과
-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 되거나 조사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4. 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5.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6.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
7. 총공사비 3억원 이상의 공사, 3천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계약서 현황
8. 제7호의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인해 증액된 공사비
9. 도급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1천만원 이상의 구매·용역 수의계약서 현황
10. 행정심판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
11. 각 위원회의 개최내용과 결과

12. 공청회 결과보고서

13. 민원처리 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 ① 집행기관에 신청·접수된 인·허가, 면허등의 민원에 대하여는 그 처리상황을 온라인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민원의 범위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공개방법 및 비용부담

제9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등에 의한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 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 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 공개 방법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한다.

제10조(비용의 부담) ① 법 제15조 제1항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규정에 의하여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각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 공개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포함한 7인 이내로 하고 이중 과반수를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외부 인사로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간으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 2. 행정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 3. 기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심의회의 운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의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6조(화순군 심의회) ① 위원은 위촉직 위원 5명(외부 전문가 3명, 군의원 2명)과 당연직 위원(총무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 한다.
③ 화순군 심의회에 관하여는 제11조 제3항 및 제4항과 제12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5장 보 척

제17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집행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행정정보공개조례는 폐지한다.